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8.

고 용 노 동 부
(직업능력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7186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 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지원·용자 또는 수강 제한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행정제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법 제55조제2항제3호 관련)

가. 일반기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원 및 용자 또는 수강 제한처분일로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1(1개월인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개별기준

구분		제한기간
법 제21조제2항에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1개월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개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년
	2천만원 이상	2년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